

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

1. 목표 및 방향

목 표

-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 -

-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강화
-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 정착
-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
-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 강화

방 향

- 지방재정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 대응 -

-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용
 - 경상예산의 최소화, 투자사업은 가용재원 범위 내 단계별 추진
 -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신규사업의 중점 검토
-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
 -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 구축
 - 투자심사 병행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
-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
 - 계획기능 및 심의기능 제고
 - 재정운용의 기본으로 활용

계획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

장기발전계획 ⇨ 중기지방재정계획 ⇨ 예산편성 연계운영

2. 계획개요

가. 계획수립

- 의 의 :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,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
- 근 거 : 지방재정법 제33조
- 대 상 :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
- 계획기간 : 2016 ~ 2020(5년)
- 수립내용
 -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 : 지역경제·재정지표 등
 - 재 정 전 망 : 세입·세출추계, 투자가용자원 판단
 - 투 자 계 획 수 립 : 투자사업 선정 및 자원배분 계획
 - 부족재원대책강구 : 지방채 등 동원가능 자원 반영

나. 수립개요

- 계획수립 주체 : 지방자치단체장
 -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
 - 계획수립기간은 5년으로 하여 재정적 여건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

2016	2017	2018	2019	2020
전년도 최종예산	발전계획	발전계획	발전계획	발전계획

- 계획수립지침 :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
- 전국계획수립 :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기초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적인 재정계획 수립